증평군 Jeung Pyeong

www.jp.go.kr

군 보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512호 2018년 4월 13일(금)

조 례

○ 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 02

훈 령

○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지침 전부개정예규 ---------- 05

공 고

○ 도안2농공단지 조사·측량을 위한 사업구역 출입공고 ---------- 17

회람									

발행 : 증평군 편집 : 문화체육과 (☎835-4131, 우27927,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4월 13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조례 제811호

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증평군수(이하 “군

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공동거주시설"이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거주시설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재원확보 방안
4.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군수는 공동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전기요금·공동전화요금 등 공동거주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과금
2. 냉·난방비

3. 시설 개보수를 위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공동거주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동거주시설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지도·점검) 군수는 지원하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2. 시설 운영의 적정성

제8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지침 전부개정예규를 발령한다.

2018년 4월 13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예규 제19호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지침 전부개정예규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금 출납원) 휴양촌, 캠핑공원, 휴양림, 산림레포츠 시설,

명상의 집 등과 그 부대시설(이하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이라 한다) 사용료의 수입금 출납원은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3조(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방법) ①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현금(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2. 신용카드, 인터넷 계좌이체・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

② 휴양촌 식당의 사용료는 1식/인을 단위로 계산한다.

③ 다목적강당을 사용할 때에는 1시간 이내의 사전준비시간을 인정하여 사용료 산정 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사용료의 감면신청 등) 조례 제6조 각 호의 자가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법인・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시설 사용료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신청자의 본인(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금의 처리) ① 수입금 출납원은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사용료 등 모든 수입금을 증평군 휴양공원사업소 출납원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 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수납된 수입금 중 예약취소 반환금, 부가가치세, 카드 수수료 등을 제외한 시설 사용료 확정금액을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증평군 금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부가가치세의 납부) ① 수입금 출납원은 휴양촌 및 캠핑공원 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시설의 사용료 확정금액 징수결정 후 즉시 휴양공원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통장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체된 부가가치세는 수입금 출납원이 일괄하여 국세청에 신고한다.

제7조(부대시설·장비 및 체험프로그램의 이용) ①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이용객 중 1박 이상 숙박시설 이용객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휴양촌: 다목적 운동장, 탁구대, 원두막, 캠프파이어장, 이동식 물놀이장, 캠핑공원 족구장 등
2. 휴양림: 다목적 구장, 물놀이장, MTB(산악자전거) 등

② 숲 해설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통한 단체이용객에 제공

함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회 이용객을 10명 내지 15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물놀이장(야외 및 이동식 포함)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로 한다.

제8조(예비객실 및 군민우선사용객실의 운영) ① 예비객실은 숙박시설의 10% 이내에서 지정·운영하며, 황토방·별무리하우스의 각 1실로 한다.

② 당일까지 사용계획이 없는 예비객실은 당일 판매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증평군민은 일반 예약일 7일 전부터 사용예약을 할 수 있으며,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객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3동
2. 황토방 2동
3. 별무리하우스 2실

제9조(이용객의 행위제한) ①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하는 행위
2. 음주 및 고성방가 행위

3. 기물 또는 비품을 파손하는 행위

4. 폭죽을 사용하는 행위

5.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과 부대시설 및 물품 이용 시 안전수칙 및 안전요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6.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는 행위

7. 별지 제1호서식의 좌구산 캠핑공원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8. 시설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 홍보를 하는 행위

9.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 홍보를 하는 행위 또는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10. 그 밖에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

②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관리자는 이용객이 제1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즉시 이용중지 또는 퇴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 등) ①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직근무는 정규직 공무원이 한다. 다만, 근무인원 부족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휴양촌 : 일직 1명, 숙직 1명

2. 휴양림 : 일직 2명, 숙직 2명

③ 휴양촌 숙박시설 이용객이 없을 경우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고, 예약 등 전화 상담은 휴양림 근무자가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1조에 따른 휴무일에는 재택근무를 하게할 수 있다.

제11조(휴무일의 지정)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18시부터 휴무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추석 연휴

3. 휴양시설의 개보수일

4. 매월 첫째 주 월요일

5. 그 밖에 군수가 휴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좌구산 캠핑공원 이용수칙

좌구산 캠핑공원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이용객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장 및 퇴소
   o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입실한 날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며, 다음 예약자를 위하여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 사용료
   o 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르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시설 이용
   o 반드시 배정된 시설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o 시설 파손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o 캠핑공원 안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4. 차량 이용
   o 캠핑장 내에서는 서행하며, 반드시 정해진 차량진행 방향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21: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는 가능한 자동차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캠핑장 1면당 주차가능 차량대수는 1대입니다. 그 외 차량은 공원입구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소 음
   o 21:00부터 07:00까지는 정숙 시간이므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쓰레기 및 폐수 처리
   o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7. 반려동물
   o 모든 동물은「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목줄, 배설물 처리 등)
10. 유실 또는 피해
   o 이용객 소유물의 분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보관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금지행위
   가. 지정장소 외에서 화기 사용은 금지되며, 캠핑공원 전 지역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
   나. 정치적 또는 종교적 홍보행위
   다.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는 상업적인 홍보 및 물품의 판매
   라. 음주 및 고성방가 행위
   마. 캠핑장내 세차
11. 긴급사태
   o 호우·강풍 등 재난으로 위급하거나 피난할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공원 이용 수칙을 어기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안내 및 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강제 퇴장조치 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숲속 모험시설 이용 동의서 및 안전수칙

(앞면) 14세 이상

숲속 모험시설 이용 동의서

NO. 책임자:

※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기재하신 고객님의 모든 정보는 숲속 모험시설 운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시설 이용 제한

- ○ 키즈코스(7세~13세) : 신장 110cm 이상
- ○ 주니어코스(14세이상) : 신장 140cm 이상
- ○ 짚라인(14세이상) : 신장 140cm 이상

※ 음주자, 임산부, 고혈압 및 심혈관계 질환자는 참가할 수 없음.

❑ 14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1. 나는 좌구산 자연휴양림의 숲속 모험시설 공중체험 놀이 활동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 나는 14세 이상입니다.
3. 나는 안전지도자의 사전 시설 이용 교육과 이 서약서의 안전규칙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모든 활동에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나는 안전로프, 카라비너와 트롤리로 이루어진 하네스 및 안전모 등 개인안전장비를 항시 착용하겠으며 안전케이블에 항시 연결된 상태로 활동하겠습니다.
4. 나는 모든 활동에 대해 개인의 안전과 기구이용에 대한 안전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며 가이드 없이 본 시설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나는 숲속 모험시설의 활동시설이 공중 장애물코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부상을 감수하겠습니다.
6. 만일 이용자에게 직·간접적인 사고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증평군청(좌구산 자연휴양림)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나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증평군청(좌구산 자연휴양림)의 과실이나 시설의 하자로 발생하는 개인의 사고나 손해는 제외함.
7. 나는 현재 시설 이용으로 피해 또는 부상당할 수 있는 질병,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음을 (임신포함) 인증합니다.
8. 개인의 변심으로 인한 체험 취소나 중도 포기의 경우에는 참가비를 환불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아래의 참가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된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 름 _____ 생년월일 _____ 연락처 _____ 서 명 _____
이 름 _____ 생년월일 _____ 연락처 _____ 서 명 _____
이 름 _____ 생년월일 _____ 연락처 _____ 서 명 _____
이 름 _____ 생년월일 _____ 연락처 _____ 서 명 _____
이 름 _____ 생년월일 _____ 연락처 _____ 서 명 _____

체험일자 20 . . .

증평군 휴양공원사업소장

(뒷면)

▣ 안 전 수 칙 ▣

본 활동은 동반 및 단체 활동이 아니며, 독립적인 개인 활동입니다.
공중활동은 위험하며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부상까지 초래 할 수도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본 활동에 앞서 안전수칙을 모두 숙지하고 안전요원의 안전지시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 활동은 안전수칙 및 안전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상, 부상 및 사망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만일 이 책임이나 위험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코스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안전수칙】

(1) 본 활동 중에 개인보호장비의 착용은 의무이며, 개인보호장비는 본 활동시설을 운영하는 안전요원이 지급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소유의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 활동 중 유지사항 : 헬멧, 장갑, 하네스, 아래의 연결 상태
- 이용자의 몸과 시설물의 연결 상태 : 2줄+카라비너 또는 1줄+트롤리+카라비너

(2) 본 활동 중 이용자는 개인보호장비의 사용 및 관리를 책임진다.
(3) 이용자는 활동 중 안전로프에 항상 2줄로 매달려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짚라인을 제외하고 최대 3명까지 플랫폼(정거장)과 게임 구간을 이용할 수 있다.
(5) 짚라인의 경우 :
- 트롤리에 카라비너를 모두 완벽히 걸고 안전요원이 지시한 출발자세로 도착지점까지 유지한다.
- 이전 이용자가 게임구간을 완전히 벗어나서 도착 플랫폼(정거장)에 도착한 후에 다음 이용자가 출발할 수 있다.
- 짚라인 하강 시 손을 절대로 트롤리 앞에 두거나 와이어를 잡지 않는다.
- 장갑은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야 한다.

(6) 모자착용을 금지하며 신발끈을 단단히 묶는다.

【비이용자의 주의사항】

짚라인 활동지역, 플랫폼(정거장)과 게임구간 도착구간 밑에 서 있거나 지나다니는 것을 삼가 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책임】

(1) 숲속 모험시설 이용 시 개인 소지품의 손상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숲속 모험시설 이용 시 현기증, 불편함 및 가벼운 상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이어로프나 플랫폼(정거장) 등의 일부구간에서 이용자 스스로 이용을 중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요원의 구조를 요청 하여야 하며, 위의 상황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이를 감수하고 시설을 이용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3) 참가조건 거짓신고, 안전수칙 미준수,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숲속 모험시설 이용 동의서 및 안전수칙

(앞면) 13세 이하

NO. _____ 책임자: _____

※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기재하신 고객님의 모든 정보는 숲속 모험시설 운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시설 이용제한

- ○ 키즈코스(7세~13세) : 신장 110cm 이상
- ○ 주니어코스(14세 이상) : 신장 140cm 이상
- ○ 짚라인(14세 이상) : 신장 140cm 이상

※ 음주자, 임산부, 고혈압 및 심혈관계 질환자는 이용할 수 없음.

❑ 유아/어린이/13세 이하 청소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

1. 본인은 아래에 기록된 유아, 어린이 또는 13세 이하 청소년 참가자(이하 “참가자”라 한다)의 부모 또는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로서 좌구산 자연휴양림의 숲속 모험시설 공중체험 놀이 활동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참가자의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본 이용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참가자 보호자의 허가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보호하는 모든 참가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2. 본인과 참가자들은 안전지도자의 사전 시설 이용 교육과 이 서약서의 안전규칙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참가자들이 안전로프, 카라비너와 트롤리로 이루어진 하네스 및 안전모등 개인안전장비를 항시 착용하고 안전케이블에 연결된 참가자들이 안전설비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 나는 숲속 모험시설의 활동 시설이 공중 장애물코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부상의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4. 나는 참가자들과의 시설 이용 중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가이드 없이 활동하는데 동의합니다.
5. 만일 이용자에게 직·간접적인 사고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증평군청(좌구산 자연휴양림)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나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증평군청(좌구산 자연휴양림)의 과실이나 시설의 하자로 발생하는 개인의 사고나 손해는 제외함.
6. 나와 참가자들이 현재 음주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음을 인증합니다.(의심스러운 경우 관리자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개인의 변심으로 인한 체험 취소나 중도 포기의 경우에는 참가비를 환불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로서 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된 내용에 동의합니다.

① 이름	나이 세		④ 이름	나이 세	
② 이름	나이 세		⑤ 이름	나이 세	
③ 이름	나이 세		⑥ 이름	나이 세	

보호자 이름 _____ 생년월일 _____ 연락처 _____ 서 명 _____

체험일자 20 . . .

증평군 휴양공원사업소장

(뒷면)

▣ 안 전 수 칙 ▣

본 활동은 동반 및 단체 활동이 아니며, 독립적인 개인 활동입니다.
공중활동은 위험하며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부상까지 초래 할 수도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본 활동에 앞서 안전수칙을 모두 숙지하고 안전요원의 안전지시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 활동은 안전수칙 및 안전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상, 부상 및 사망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만일 이 책임이나 위험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코스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안전수칙】

(1) 본 활동 중에 개인보호장비의 착용은 의무이며, 개인보호장비는 본 활동시설을 운영하는 안전요원이 지급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소유의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 활동 중 유지사항 : 헬멧, 장갑, 하네스, 아래의 연결 상태
- 이용자의 몸과 시설물의 연결 상태 : 2줄+카라비너 또는 1줄+트롤리+카라비너

(2) 본 활동 중 이용자는 개인보호장비의 사용 및 관리를 책임진다.
(3) 이용자는 활동 중 안전로프에 항상 2줄로 매달려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짚라인을 제외하고 최대 3명까지 플랫폼(정거장)과 게임 구간을 이용할 수 있다.
(5) 짚라인의 경우 :
- 트롤리에 카라비너를 모두 완벽히 걸고 안전요원이 지시한 출발자세로 도착지점까지 유지한다.
- 이전 이용자가 게임구간을 완전히 벗어나서 도착 플랫폼(정거장)에 도착한 후에 다음 이용자가 출발할 수 있다.
- 짚라인 하강 시 손을 절대로 트롤리 앞에 두거나 와이어를 잡지 않는다.
- 장갑은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야 한다.

(6) 모자착용을 금지하며 신발끈을 단단히 묶는다.

【비이용자의 주의사항】

짚라인 활동지역, 플랫폼(정거장)과 게임구간 도착구간 밑에 서 있거나 지나다니는 것을 삼가 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책임】

(1) 숲속 모험시설 이용 시 개인 소지품의 손상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숲속 모험시설 이용 시 현기증, 불편함 및 가벼운 상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이어로프나 플랫폼(정거장) 등의 일부구간에서 이용자 스스로 이용을 중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요원의 구조를 요청 하여야 하며, 위의 상황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이를 감수하고 시설을 이용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3) 참가조건 거짓신고, 안전수칙 미준수,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증평군 공고 제2018-284호

도안2농공단지 조사·측량을 위한 사업구역 출입공고

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안2농공단지 사업구역 내 토지·물건 조사 및 측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4월 13일

증 평 군 수

1. 사업시행자 : 도안2농공단지개발(주)
2. 사 업 명 : 도안2농공단지 조성사업
3. 출 입 자 : 허가증 소지자 3명
4. 출입기간 : 공고일부터 ~ 3개월간
5. 출입목적 : 농공단지 준비를 위한 조사 및 측량 등
6. 출입대상 토지 및 소유자 : 붙임조서
7. 문 의 처 : 증평군 경제과(☏835-4032)
8. 기 타

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나. 사업시행자는 측량·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 본 공고로써 붙임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한다.

증평군 공고 제2018-284호

도안2농공단지 조사·측량을 위한 사업구역 출입공고

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안2농공단지 사업구역 내 토지·물건 조사 및 측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4월 13일

증 평 군 수

1. 사업시행자 : 도안2농공단지개발(주)
2. 사 업 명 : 도안2농공단지 조성사업
3. 출 입 자 : 허가증 소지자 3명
4. 출입기간 : 공고일부터 ~ 3개월간
5. 출입목적 : 농공단지 준비를 위한 조사 및 측량 등
6. 출입대상 토지 및 소유자 : 붙임조서
7. 문 의 처 : 증평군 경제과(☎835-4032)
8. 기 타

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나. 사업시행자는 측량·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 본 공고로써 붙임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한다.

토 지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1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83	답	1,110	1,110
2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84	전	332	332
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85	답	1,956	1,956
4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86	전	394	386
5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88	전	383	268
6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89	답	4,606	4,606
7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95	답	585	585
8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20	답	3,569	3,569
9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22	답	1,131	1,131
10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24	답	2,342	2,342
11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26	답	1,077	1,077
12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31	답	1,023	1,023
1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32	답	1,731	1,731
14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35	답	904	904
15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36	답	1,317	1,317
16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37	답	1,240	1,240
17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38	답	3,535	3,535
18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39	답	3,901	3,901
19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40	답	2,463	2,463
20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42	답	1,406	1,406
21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43	답	2,963	2,963
22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44	답	1,163	1,163
2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58	구	1,032	1,032
24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59	전	609	609
25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61	창	1,588	1,588
26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79	답	2,913	2,913
27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80	답	1,208	1,208
28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81	답	2,653	2,653
29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94	답	1,554	1,554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30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95	전	1,128	1,109
31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96	답	1,398	1,398
32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97	답	1,621	1,621
3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99	답	1,046	1,046
34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17	천	2,561	70
35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19	구	668	145
36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47	구	9,830	8,928
37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48	도	605	605
38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49	도	106	106
39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82-3	구	1,017	21
40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84-2	구	529	529
41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87-1	답	1,941	1,941
42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87-2	답	1,082	1,082
4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20-1	답	917	917
44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22-1	답	2,227	2,227
45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24-1	답	1,527	1,527
46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26-1	답	2,560	2,560
47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27-1	도	669	669
48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31-1	답	1,518	1,518
49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35-1	답	653	653
50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36-1	답	1,930	1,930
51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37-1	답	1,046	1,046
52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40-1	답	1,610	1,610
5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42-1	답	2,500	2,500
54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43-1	답	2,975	2,975
55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44-1	답	1,810	1,810
56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44-2	답	2,141	2,141
57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45-1	도	327	327
58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57-19	장	312	312
59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58-1	전	37	37
60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58-2	전	38	38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61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60-1	전	27	27
62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61-4	전	204	204
6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61-5	구	239	239
64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80-1	답	1,497	1,497
65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81-1	답	2,642	2,642
66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92-4	도	13	13
67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92-5	도	1,680	1,680
68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94-1	답	1,755	1,755
69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95-1	답	1,689	1,689
70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95-2	답	61	61
71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95-3	답	14	14
72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96-1	답	788	788
7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97-1	답	1,639	1,639
74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99-1	답	1,196	1,196
75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00-14	답	38	38
76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00-15	답	42	42
77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00-6	도	981	981
78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01-7	답	16	16
79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03-1	도	888	888
80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04-1	답	73	73
81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04-2	도	3	3
82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16-5	도	11	11
8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17-10	천	201	4
84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17-11	천	241	16
85	미지번	미지번	전	123	123
86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10-1	임	9,421	8,204
87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10-11	임	6,063	6,063
88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10-3	구	81	81
89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10-4	임	101	101
90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10-5	구	333	333
91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10-7	구	1,130	36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92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10-8	구	12	12
9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4	임	3,854	286
94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6	임	59,449	3,044
95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6-3	구	2,176	1,710
96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9-1	임	246	246
97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9-3	구	335	335
98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11-4	임	443	443
99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10-2	임	5,028	5,028
100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64-1	전	2,391	38
101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64-2	전	2,175	1,188
102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65-1	전	2,325	2,325
10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66-1	전	2,459	2,459
104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66-7	전	2,384	1,508
105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13	임	5,950	4,291
106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12	임	2,477	2,286
107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15	임	1,735	3
108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15-1	도	1,735	50
109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12-1	도	1,093	589
110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78-1	답	502	2
111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71-2	잡	182	182
112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65	대	982	982
11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65-2	전	330	330
114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66-6	도	280	280
115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67-5	도	62	12
116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67-6	도	64	28
117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66-3	도	33	6
118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68-4	도	654	2
119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66-5	도	136	98
120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66-4	도	74	65
121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16-2	도	3,531	19
122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18	도	1,831	85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12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76-2	도	90	23
124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76-7	전	93	55
125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76-8	대	233	120
126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18-5	대	354	2
127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44	도	6,040	3,062
128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45	구	1,012	689
129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94	답	1,589	1,589
130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94-1	답	1,308	1,308
131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546	구	556	556
132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93-1	답	2,187	2,187
13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62-2	답	2,399	2,399
134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62-1	답	2,352	2,352
135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62	답	2,084	2,084
136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34	답	1,678	1,678
137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61-7	전	1,020	1,020
138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61-1	목	1,598	1,598
139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61-6	답	1,985	1,985
140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61-2	답	1,653	1,653
141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23-1	대	420	420
142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61-5	도	59	59
143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61-3	도	49	49
144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61-4	도	9	9
145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61	목	762	762
합 계				266,665	179,102